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9. 24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9월 8일
나. 발 의 자: 김지연 의원 외 6명
다. 회부일자: 2025년 9월 18일
라. 상정일자: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9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우경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❍ 구청 전 부서와 주민자치회·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범분야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고, 통·반장 및 직능단체 인력을 생명지킴이로 적극 양성하여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구청장의 책무 강화(제5조)

❍ 생명지킴이 제도 내실화(안 제14조~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❍ 서울시 정신건강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 수는 전국 27.2명, 서울시 23명이며, 우리 구(區)는 18.1명으로 전국, 서울시 자살률 대비 다소 낮지만 여전히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은 존재함.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주민 기반 강화, 통합적 협력 구도 확보, 주민참여형 생명지킴이 제도의 구체적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됨.

❍ 주요내용

- 안 제3조에서는 자살고위험군, 생명지킴이, 자살유발정보의 정의를 추가함.
- 안 제7조에서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내용에 생명지킴이 양성·운영 및 지원 계획을 추가하고, 안 제9조의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도 생명지킴이가 위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13조에는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내역을 추가하였으며,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는 생명지킴이 양성 의무와 역할, 지원체계 등을 구체화함.
- 안 제17조에는 자살예방의 날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❍ 검토 결과

- “생명지킴이”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, 2023년 7월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이 일부개정되며 의무화 된 자살예방 교육 내용에도 생명지킴이 교육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생명지킴이 양성 및 지원체계 등을 구체화 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올해 초까지 우리 구(區)의 생명지킴이 활동가는 총 7명으로 자살예방 캠페인, 자살수단 차단사업, 생명존중길 운영, 준사례관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,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23조와 「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에 근거하여 실비 및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었음.
- 올해 5월 집행기관에서는 통반장, 50+센터 중장년, 또래지킴동아리 인원 등 70명을 추가 모집하였으며,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생명지킴 활동가를 적극 양성·운영하고자 통계목간 예산 조정을 통해 이들의 활동경비 및 활동보상금을 추가 확보하였기에 이들의 지원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짐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지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96

발의연월일: 2025. 9. .

발 의 자: 김지연、정선희、유승용 임헌호、전승관、최인순 우경란 의원 (7인)

1. 제안이유

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서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범분야 과제입니다.

영등포구에서도 청소년·청년, 중장년,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위험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, 기존 보건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.

이에 본 개정안은 구청 전 부서와 주민자치회·직능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범분야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고, 통·반장 및 직능단체 인력을 생명지킴이로 적극 양성하여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이를 통해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발굴·지원하고,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의 책무 강화(제5조)

나. 생명지킴이 제도 내실화(안 제14조~제15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,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자살고위험군”이란 자살시도자, 자살위험자 및 자살자 유족을 포함하는 자

5. “생명지킴이”란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

7. “자살유발정보”란 법 제2조의2 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하다”를 “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자살의 사전예방”을 “자살예방”으로, “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”을 “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범분야 정책으로 통합·추진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자살유발정보 예방체계의 구축 및 대응

8. 생명지킴이 양성·운영 및 지원 계획

제8조제1항 중 “파악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”를 “관리하기 위하여

자살통계를 상시 수집·분석하고,"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13명"을 "1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,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,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
6.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

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
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, 제14조를 제16조로 하며, 제14조, 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생명지킴이의 양성) ① 구청장은 매년 일정 수 이상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생명지킴이 양성 시 관내 통·반장을 비롯하여 지역 직능단체의 인력을 우선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들이 자살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생명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전문기관 연계

2. 정기적 접촉(전화・방문 등)을 통한 준사례관리와 위기 징후 모니터링

3. 자살예방 캠페인, 교육, 홍보 활동 참여

4. 자살수단 차단사업 참여(생명사랑 실천업소・고시원・숙박업소・번개탄 판매소 점검 등)

5. 생명존중길 조성・관리 등 환경개선 활동

6. 아동・청소년・중장년・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협력

7. 경찰・소방・응급실・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자살시도자・가족・유족에 대한 위기 개입 및 사후관리 지원

제15조(생명지킴이의 지원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생명지킴이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・교통비・교육비・보험료・안전조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생명지킴이에게 정기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,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17조(자살예방의 날 등)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자살예방주간에 범구민 교육・홍보・캠페인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“자살고위험군”이란 자살시도자, 자살위험자 및 자살자 유족을 포함하는 자
<신 설>	5. “생명지킴이”란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여 자

	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
4. (생 략)	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<신 설>	7. “자살유발정보”란 법 제2조의2 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
제4조(구민의 권리와 의무) ① (생략)	제4조(구민의 권리와 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민 및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, 기관의 장, 사업주는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다.	② ---------- 한다.
제5조(구청장의 책무) ① 구청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5조(구청장의 책무) ① ---------- 자살예방 ----------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범분야 정책으로 통합·추진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7조(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) ① (생 략)	제7조(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	② 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	6. 자살유발정보 예방체계의 구축 및 대응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8. 생명지킴이 양성·운영 및 지원 계획
8.·9. (생 략)	9.·10. (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)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(자살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	제8조(자살실태조사 등) ① ---------- ---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상시 수집·분석하고, ----------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9조(위원회 설치·구성) ① (생략)	제9조(위원회 설치·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② ---------- 15명 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	④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5.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및

	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.
5. (생 략)	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⑤·⑥ (생 략)	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10조(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할 수 있다.	제10조(회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센터(이하“자살예방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2. (생 략)	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3. (생 략)	5. (현행 제3호와 같음)
<신 설>	6.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
4.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	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5. (생 략)	7.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삭 제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4조(생명지킴이의 양성) ① 구청장은 매년 일정 수 이상의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	② 구청장은 생명지킴이 양성시 관내 통·반장을 비롯하여 지역 직능단체의 인력을 우선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들이 자살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 ③ 생명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 1.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전문기관 연계 2. 정기적 접촉(전화·방문 등)을 통한 준사례관리와 위기징후 모니터링 3. 자살예방 캠페인, 교육, 홍보활동 참여 4. 자살수단 차단사업 참여(생명사랑 실천업소·고시원·숙박업소·번개탄 판매소 점검 등) 5. 생명존중길 조성·관리 등 환경개선 활동 6. 아동·청소년·중장년·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협력 7. 경찰·소방·응급실·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자살시도자

	·가족·유족에 대한 위기 개입 및 사후관리 지원
<신 설>	제15조(생명지킴이의 지원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생명지킴이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·교통비·교육비·보험료·안전조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구청장은 생명지킴이에게 정기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고,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제14조 (생 략)	제16조 (현행 제14조와 같음)
<신 설>	제17조(자살예방의 날 등)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자살예방주간에 범구민 교육·홍보·캠페인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15조 ~ 제18조 (생 략)	제18조 ~ 제21조 (현행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)